

대구지방법원 2023. 5. 17 선고 2022나321076(본소), 2022나323966(반소) 판결 [공탁금
출급청구권 확인 · 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 주식회사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주식회사 F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

변 론 종 결 2023. 4. 19.

판 결 선 고 2023. 5. 17.

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6. 30. 선고 2020가단61468(본소),
2020가단68506(반소), 2021가단61762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를 각하한다.
3.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J 주식회사가 2020. 7. 21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금 제937호로 공탁한 257,776,705원 중 100,000,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(반소피고)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나. 반소

1)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. 5. 4.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2)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 한다)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1)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부터 제3항까지(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)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3)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피고의 주장

제1심 법원이 제1심 공동피고 H 및 I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이상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나) 판단

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,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,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(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3110 판결 참조).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(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77785, 277792 판결 참조),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,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).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민법 제407조가 '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'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판결 그 자체의 효력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판결의 결과 '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효력'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어느 채권자가 받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다른 채권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, 여전히 이 사건 공탁금 중 100,000,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[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를 다투면서

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,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, 본소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. 그 경우 법원이 반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,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, 비록 그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,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(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77785, 277792 판결 참조).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므로, 이 사건에는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 “3) 소결론”을 “4) 소결론”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4.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원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1 기재 채권에 관한 2020. 5. 4.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B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.

나.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

‘원고가 2020. 5. 4. B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’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0. 8. 21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, 피고 지배인 L이 참석한 제1심 제3회 변론기일(2021. 2. 10.)에 B의 지방세 체납사실이 기재된 제1심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가 도착하였음이 고지된 사실, 제1심 공

동피고 H은 2020. 10. 26.자 답변서, 2020. 11. 18.자 반소장, 2021. 3. 30.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, 피고 지배인 L이

참석한 제1심 제5회 변론기일(2021. 6. 23.)에 위 2021. 3. 30.자 준비서면이 진술되고, B가 발행한 어음이 2020. 5. 4.경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났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회신서가 도착하였음이 고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, 을바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.

10.경부터 2020. 4.경까지의 물품공급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2,101,428,042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으나 2020. 5. 4.까지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, 2020. 5. 4.경 B로부터 위 어음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신 B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B로부터 331,943,86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2021. 6. 23.경에는 ‘B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난 2020. 5. 4.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’, ‘2020. 5. 4.경 B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다는 사실’ 및 ‘B의 채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H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’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,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위 2021. 6. 23.경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. 9. 22.이 되어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, 이 사건 반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석수, 판사 박만호, 판사 신안재

목 록 1

1.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

채권자(양도인) 주식회사 []

채무자 [] 주식회사 []

양수인 [] 주식회사

2. 양도양수채권의 내용

주식회사 []가 [] 주식회사

[]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청구채권 금100,000,000원

3. 채권 양도양수 계약일자

2020. 5. 4.

목 록 2

소외 [] 주식회사 [] 가 2020. 7. 21. 피고 주식회사 []

[] 주식회사, 원고 [] 주식회사, 주식회사 []

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금제937호로 공탁한 257,776,705

원 중 100,000,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

1) 원고는 제1심에서,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, C 주식회사, 주식회사 E, G 주식회사, H 주식회사, I 주식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였고, 제1심 법원은 위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.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 H 주식회사, I 주식회사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, 제1심 법원은 위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. 그런데 위와 같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고,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,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.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,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로 제한된다.